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5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1. 12. 15.(수) 10:0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

# 제5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0시 0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1년도 제5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54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55차 서면회의 결과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2021-56-178)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주문입니다. ‘<가>. 주식회사 웨이 등 [별지 1]에 기재된 8개 법인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하고, 기재된 8개 법인에 대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하고 [별지 1] 기재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과한다. <나> 주식회사 편월드 등 [별지 2] 기재 6개 법인에 대해서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2일~9일까지 허가신청을 접수한 결과, 주식회사 편월드 등 총 14개 법인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격사유 조회결과 문제가 없었으며 재무, 영업, 기술 분야 등 각 분야 전문가 9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은 먼저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 관련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획득 시 적격 판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주식회사 웨이 등 총 8개 법인은 총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적격으로 판정하였고, 주식회사 편월드 등 6개 법인은 심사사항별 점수는 60점 이상이나, 총점이 70점에 미달하여 부적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치정보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내년부터는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로 되는 것이지요?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내년 4월 20일부터 개정된 위치정보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번이 허가제 마지막 심사가 되는 것입니까?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해야겠지만 기업들이 원한다면 내년 1/4분기 중에 한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등록제로 바뀌는데 앞서서 이렇게 허가제에서 심사해 보니까 적격으로 판정받는 것이 57.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나머지는 부적격이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는 등록을 하면 모두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사후 관리가 더욱 철저해져야 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 앞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등록제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어떤 시스템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서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등록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무조건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등록요건에 부합한 경우에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는 완화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법인이 능력을 갖추었을 때 등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태점검을 강화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위원장

- 이번 심사를 통해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은 8개 사업자 분들께서는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의 준수와 허가조건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내년 4월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서 진입규제가 완화됩니다. 사무처에서는 등록제 전환에 따른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에 힘써 주시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모두 원안에 동의해 주셨고,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사후 규제에 보다 철저할 것에 대한 주문도 다 같이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21-56-179)**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추진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 보시겠습니다.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배점 조정 항목입니다. 시청자위원회 운영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전체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및 경영진·시청자위원 참석 비율 등 평가를 추가하였습니다.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편성시간대 배점을 확대하였습니다. 오보 관련 평가 강화를 위해서 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또는 명예훼손 판결 시 감점을 확대하였습니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평가 강화를 위해 시간대별 배점을 확대하였습니다. 방송평가 항목 신설 사항입니다. 윤리강령 관련 방송평가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 방송평가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유사 프로그램 증가에 따라 채널 다양성 및 창의성 방송평가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남북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민족 동질성 확보를 위해 「남북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재난취약계층 대상 재난 정보 제공 평가항목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배점 균형성 제고를 위해서 자체제작

비율에 대한 평가를 OBS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도PP에 대해서 프로그램 수상실적 배점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성방송과 관련하여 직사채널을 운영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서 전체 배점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 기준 개선 사항입니다. 재난방송 관련 교육실적에 온라인 교육을 포함하였습니다. 상대평가는 9등급, 절대평가는 5등급으로 평가 방식을 일관성 있게 개선하였습니다. 감점항목의 법인단위 적용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채널에 대해서만 감점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의신청 및 자료 제출 규정 명확화 관련 부분입니다. 사업자에 대한 평가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방송평가 자료 제출기한을 2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10일 부여하며 이 기간 중에 추가자료 제출 시에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예고안에 대한 사업자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입니다. 시청자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범위와 시청자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창구 방식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경영진의 참석여부,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건수 평가 등은 평가개선안을 유지하였습니다. 윤리강령 평가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 등 기존 조직과 겹적을 인정하도록 수용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질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채널 간 유사 프로그램 방지 등 국회 지적을 고려하여 조사항목의 다양성, 창의성 점수를 반영하는 형태로 평가개선안을 유지하였습니다. 오보관련 평가와 관련해서는 허위정보 유통확산을 고려해서 감점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유지하였습니다. 남북방송 편성과 관련해서는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규정에 따라 평가개선안을 유지하고, 다만 프로그램 내 코너 신설은 인정하여 수용하였습니다.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특보 방송평가 신설에 대해서는 재난특보에 대해 우선 도입하고 수어방송은 추후 반영하는 것으로 수용하였으며, 재난보도는 재난특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평가개선안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자 제출의견과 검토의견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7페이지에 보면 <마>항 남북방송 편성 평가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해달라는 의견은 수용하지 않았는데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규정에 따라'라고 했는데 방송법의 어느 규정을 따른다는 것이지요? 방송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몇 조 몇 항의 규정을 따른다는 것입니까?

○ **곽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방송법 제31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평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이 방송평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인데 평가한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곽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방송법 제4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편성에 대한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 박동주 방송기반국장

- 일단 방송법 제31조에는 방송평가 부분에 대해서 방송평가가 방송프로그램의 운영과 편성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 제6조제6항에 보면 민족문화의 창달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보면 방통위가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에 대해서 활동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이 조항은 방송편성의 자율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개정 초안 안건에서도 제가 그런 의견을 밝혔고, 방송사들도 이의제기를 했지만 결국 이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송사들이 남북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할 경우 방송평가 때 10점의 가점을 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한 분이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바로 아까 이야기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법에도 없는 조항으로 편성에 관여하는 것은 방송편성의 자율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지적이 일리가 있고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해당 항목의 배점 크기 10점 관련해서도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평가에 비하여 너무 과하다는 우려입니다. 현재 지상파 또는 중편이 방송법 심의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을 경우 방송평가에서 10점이 감점됩니다. 또한 방송편성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12점이 감점됩니다. 사실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 또는 심의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받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체 방송편성 또는 심의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와 특정 분야의 프로그램 편성 여부가 동일한 무게감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따져볼 일입니다. 이 개정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남북 간의 이해 증진과 민족 동질성 확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행 개정안은 방송사들의 이의신청 내용과 같이 방송편성의 자율침해 문제와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행정청이 모두 다 받아들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국회의원의 문제제기가 일리가 있다면 행정청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지적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대로 이런 개정안을 만드는 이 조항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나머지는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 김효재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다음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방송평가규칙 일부개정 사항은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와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위원회가 지난 3월에 「방송평가 제도개선연구반」을 구성·운영해서 그동안 6차례 회의를 개최해서 검토하고 논의해서 방송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방송평가위원들은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송평가규칙 주요 개정사항에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시청자위원회 등 4개 항목에 대한 배점 조정과 윤리강령 등 5개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방송평가규칙 개정으로 시청자위원회 운영은 물론이고, 공익광고 편성이나 오보 방지 등이 강화되고, 윤리강령과 또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남북 관련 프로그램, 재난취약계층 재난정보 제공 관련 평가 등이 신설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를 통해서 사업자 간 평가의 변별력이 강화되고 방송평가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방송평가 제도개선을 위해 김창룡 위원님과 방송평가위원님들 그리고 사무처에서 많은 고민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청자위원회 운영 방안, 운영 강화, 비상업적 공익광고 활성화, 윤리강령 및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평가항목의 신설, 보완 등을 통해 지나친 상업화로 약해진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배점을 조정하고 일부 기준을 개선하는 등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화에 힘썼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평가항목 중 남북 관련 프로그램 편성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남북 간 이해를 증진하고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목적과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방송사 자율에 맡기지 않고 평가를 통해서 일정 부분 반강제화하고, 특히 공영방송이 아닌 상업방송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라는 것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행정예고 시 사업자들도 특정 주제 편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편성 자율성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편성에 대한 규제와 평가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평가의 자유와 독립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방송법 취지와 자율이 아닌 평가는 또 다른 규제로 적용될 수 있어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도는 이해하지만 다른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남북관련 프로그램 편성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에 사무처 원안에서 남북관련 프로그램 편성 관련 항목을 제외한 수정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상당 기간을 통해 연구되고 그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창룡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평가 제도개선을 위해 애써 주신 점에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방송평가는 1년마다 방송 현황을 점검한다는 의미와 함께 방송평가 기준을 통해 방송이 지향해야 할 공공성과 공익성 등 공적책무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외주제작 시장에서 상생환경 조성, 재난방송 평가 강화 등 당시 이슈에 대해 방송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청 행태를 반영하여 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등 시청자 의견청취를 강화한다는 점, 오보 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윤리강령,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다양성, 창의성, 남북관련 프로그램 편성 등 사회적으로 중요시되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신설하였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방송사업자마다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대평가, 절대평가 등급 배점 방식을 일관성 있게 변경하고, 이의신청 및 자료제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 평가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 대해 평가의 질적 향상과 실효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또한 남북관련 프로그램 평가 신설에 대한 것은 국정감사 보고안건 서면접수, 이해관계자 의견 조정 시 편성권이 침해된다는 등의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거리를 좁히고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도입 취지에 반대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요건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방송법에는 방송이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함을,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는 정부에게 남북 간 방송통신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평가한 항목이므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점 방식 역시 편성하지 않을 경우 감점이 아니고 편성한 경우 가점을 받는 것이며, 가점의 범위도 최대 10점으로 다른 평가항목과 비교해 볼 때 남북 동질성 회복이라는 가치에 비해 과도한 배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 내 코너까지 실적으로 인정할 예정이므로 형식적 측면에서도 자율성을 보장하여 특정 프로그램을 강제하여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통일관련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는 등 방송을 통한 문화교류 협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텔레비전과 라디오 각 1개씩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수준이고, 매년 공모를 통해 제작사를 선정하다 보니 양적 다양성이나 연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2021년 프로그램은 SBS TV 2부작 <청년들의 페이스북>에 2억 9,000만원이 소요됐고, CBS 라디오 10부작 <통일로 가는 시간>에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의 남북 관계나 통일에 대한 인식은 꾸준히 변화되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으며, 1인 방송 등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기는 하나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경험이 일반화될 우려가 있는 등 국민 의식을 반영하는 콘텐츠 간 상호 검증해야 할 사회적 시급성과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즉, 남북 이해 증진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긴요한 때로서 방송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방송평가에 남북 프로그램 항목을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상파TV, 종편·보도PP에 이 점수를 가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적 성격을 띤 프로그램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번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원안 동의합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대체적으로 전체 규칙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고, 남북방송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10점 가점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의견을 달리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도 논의하였고 취지에 대해 충분히 말씀을 나눈 것으로, 의견개진 하신 것으로 생각해서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았으면 하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일리가 있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청이 들은 척 하지 않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다는, 특히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저도 사무처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전원 일치의 의견이고 남북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견이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이므로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의결하기 전에 국회를 무시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상당한 내용에 대해서 경청, 수렴하고 여야를 떠나서 제기 되는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지적된 내용은 북한 방송을 방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편성권 침해 2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지적된 북한방송을 방영하는 것 아니냐 역시 그것이 편성권에 대한 침해라고 봅니다. 북한방송을 편성해서 방영하라는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편성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지상파방송, 종편은 남북방송 교류협력의 차원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사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방송된 내용도 있지만 남측 관계자가 북측에 가서 찍은 내용도 있습니다. 국회를 무시했다고 연결하는 것은 과하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서 행정청의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방송법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것을 국회 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국회의원의 지적 가운데 편성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본 것이고, 그 점을 행정청이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마지막으로 공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편성의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남북관련 방송의 경우 각 방송사 자율에 맡기면서 제가 선한 의지를 썼습니다만 선한 의지에 따라 그 의지에 따른 자율적인 고급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의 공익과 이처럼 점수가 주어졌을 때 반강제성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반강제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통한 공익이 어떤 것이 우선할 것인지에 대해 한번 우리가 평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남북 방송 프로그램의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은 충분히 나누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동의하신 것이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과반의 의견이 원안 동의 의견이므로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습니다.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12월 22일 오후 2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1년도 제5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8분 폐회 】